

朝鮮王朝 軍船에 관한 考察 —金在瑾教授의 研究를 契機로 하여—

南 天 祐

서울대학교 自然科學大學 物理學科

1977년 4월 一潮閣에서 發行된 金在瑾著「朝鮮王朝軍船研究」는 同王朝 初期로부터 純祖 때까지에 걸친 우리나라 軍船에 관한 研究書이다. 同書의 構成은 1. 朝鮮初期의 軍船, 2. 板屋船, 3. 龜船, 4. 壬辰倭亂 中の 軍船, 5. 朝鮮後期の 軍船, 6. 朝鮮後期船舶의 構造 등의 6個章으로 되어 있으며 그 末尾에는 全體的인 綜合이 要約되어 있다.

以上の 6個章 中에서 제 4 및 제 5章은 著者가 새로 執筆한 것이며, 제 1, 제 2, 및 제 6章은 1975년 또는 1976년의 論文들을 그대로 轉載한 것이며, 그 나머지의 章인 제 3의 龜船章은 1974년의 論文을 轉載한 것이나, 그 內容 中에서 櫓의 設置方法 문제와 櫓役의 位置문제에 대한 見解가 그 이후에 바뀌었음을 아울러 說明하고 있다.

同書의 內容이 주로 밝히고자 바라는 것은 대체로 두가지로 分類될 수 있다. 즉, 그 中の 하나는 水軍 및 軍船의 變遷 또는 發達過程을 體系的으로 밝히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龜船을 包含한 軍船들의 構造를 究明하는 문제, 즉 復元에 해당될 문제이다.

1934년에 發表된 H. H. Underwood씨의 論文을 爲始하여 以上の 두가지 側面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에 의하여 研究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 中의 成果는 아직도 크게 未盡한 狀態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核心部分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하여서조차도 未解決인 채로 남겨져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2 側面中 後者の 경우 즉 構造究明 문제에 있어서 더 甚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1976년 6월 12일에 開催된 韓國科學史學會 年會에서의 「龜船」을 主題로 하였던 專門家들의 討論會에서조차도 龜船構造가 어떠한 것이었을가의 문제에 대하여 確實한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며, 다만 龜船模型의 製作者인 浪元植씨에 의하여 龜船의 構造문제에는 아직도 네가지 未解決의 基本문제가 남겨져 있음이 指摘되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사실 忠南 牙山の 顯忠祠를 비롯하여 龜船의 大型模型들은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으며, 또한 龜船構造를 究明하는 論文들도 많이 發表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上記의 例는 그들이 결코 龜船研究의 만족스러운 結果를 反映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며, 1976년 6월 당시의 學界의 成果가 이와 같이 대단히 未洽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今般의 金在瑾教授의 著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至大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同書 發刊의 意義는 대단히 큰 것이며, 同書는 지금까지 分散되어 있던 軍船에 대한 研究論文들을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한 곳에 묶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文獻의 句節들이 引用 紹介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目錄들이 收錄되어 있다. 이것은 비단 專門家들에 대해서만 貴重한 자료일 뿐 아니라 또한 많은 非專門家들로 하여금 李朝時代 軍船에 대하여 보다 더 接近할 수 있는 機會와 자료를 주는 것이며, 궁극에 가서는 龜船에 대하여서도 그 原型構造를 찾아 낼 수 있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우기 同書의 著者が 造船工學의 元老教授라는 점으로 하여, 우리들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集中될 수 밖에 없는 側面은 船舶의 構造문제인 것이며, 우선 이에 대한 우리들의 綜合的인 見解의 一部를 말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端的으로 말해서 同書에서의 船舶構造究明의 內容은 上述한 바 있는 1976년 6월 당시의 단계보다는 크게 進一한 것이다. 그러나 同書에서의 構造說明이 異論의 餘地조차도 없는 完璧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同書의 여러 部分에서 아직도 再檢討를 요하는 部分들을 指摘할 수 있다.

1. 우선 同書 p.252의 綜合欄 제 6項의 句節을 引用해 보기로 하겠다. 거기에는

「龜船은 板屋船型을 利用하여 그 上粧을 改造한 특수軍船이다. 猛船과 같은 平船을 가지고서는 倭敵을 소탕하기 힘들므로, 櫓軍을 보호하고 砲座도 높이기 위하여 平船 위 全面에 板屋을 가설한 板屋船이 개발되고, 板屋上의 射夫와 砲手마저도 차폐하기 위하여 板屋船의 갑판을 穹窿化한 것이 龜船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 句節의 앞 部分은 板屋船의 船型을 說明한 것이며, 그 뒤의 部分은 龜船을 說明한 것이다. 즉 그 앞의 部分에서는 板屋船은 主船體의 上面全體部分에 板屋을 가설한 船型이라는 점과, 射夫와 砲手의 位置는 모두 2層部位인 板屋上의 甲板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단히 說得力 있는 說明이므로 누구나 首肯할 수 있는 內容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뒤의 部分인 龜船에 대한 說明部分에서

i. 板屋甲板 위에서 戰鬪하는 射夫와 砲手를 차폐하기 위하여,

ii. 그 甲板 自體를 없애 버리고 그것에 대신하여 그곳을 穹窿化한 것이,

龜船이다 라고 되어 있는 內容에 대하여서는 의

문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즉 板屋甲板上部의 射夫를 차폐하기 위한 目的이라면 우선 板屋甲板 그 自體는 그대로 두어야 되며 그리고 나서 그 上部에 또다시 차폐施設을 하여야 옳을 것임에 反하여, 同書에 있어서는 板屋甲板 그 自體를 穹窿化로 代替해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上記 句節의 內容은 단순한 表現上的 잘못은 아니다. 즉 同書에서는 여러 곳에서 同一 內容의 說明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p.153의 復元斷面圖에도 甲板 그 自體를 穹窿化한 龜船이 分明히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로서는 龜船의 上粧은 同書가 뜻하는 바와 같은 單層이 아니라 2層의 構造이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上記 引用 句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원래 板屋船은 높은 位置 즉 그의 2層部位인 板屋甲板 上部에서 射夫와 砲手의 戰鬪行爲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것은 單層뿐인 平船과는 比較될 수 없는 優秀한 軍船型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高大한 敵船과의 接近戰의 경우를 假想한다면 그 때에는 敵船의 樓閣이 板屋甲板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板屋上의 射夫와 砲手들은 모두 敵의 射擊 앞에 그대로 露出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脆弱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接近戰時에 板屋船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脆弱點을 補完한 것이 龜船이며, 따라서 板屋甲板 上部에 또다시 龜蓋板을 씌운 것이 龜船이라고 筆者로서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龜船의 主要임무가 突擊船이라고 하는 것, 즉 그것이 接近戰의 强者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서는 再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 즉 龜船의 上粧이 單層이나 또는 2層이나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뒤에서 또다시 言及하게 될 것이지만 이곳에서는 우선 同書에서의 龜船에 대한 說明 중에는 充分한 說得力을 지니지 못한 部分이 있다고 하는 점만을 指摘해 두고, 다음으로는 龜船의 櫓役位置 문제에 대한 同書에서의 說明內容을 살펴 보기로 하자.

2. 同書 p.129에서는 龜船에 있어서의 櫓役의

位置문제와 櫓의 設置方法 문제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內容의 項目으로 要約될 수 있다. 즉 그것은

i. 著者の 元來의 見解와 그후에 改正된 現在의 見解,

ii. 그러한 見解改正에 隨伴되어 同書의 餘他 說明內容 중에서 修正되어야 할 事項,

iii. 그러한 見解改正의 動機, 등의 세가지 內容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우선 p.129의 句節 중에는 다음과 같은 部分들이 있다.

『元來의 論文에서는 龜船에서의 櫓役의 位置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즉, “……鋪板上에서 櫓役을 한다고 假定하면 그것은 櫓役과 戰鬪行爲 등 모든 활동이 鋪板上 蓋板下 그 한 場所에 集中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150名 内外의 乘務員이 한 곳에 모여 혼잡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효율적인 전투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龜船圖를 보면 櫓는 鋪板上에서 지어야 할 것 같이 그려져 있지만, 어떻게 外板이나 鋪板을 뚫고 櫓를 붙이는가 하는 것도 構造上 문제가 된다. 이상 고찰한 바로써 龜船의 櫓役은 鋪板下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斷定을 하고 싶다. …”

그러나 그 후 1975년……(中略, 7行)……다음과 같이 생각을 고치게 되었다.

즉 櫓役位置는 鋪板下가 아니고 역시 鋪板上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鋪板下라고 斷定한 이유로서는 構造上의 難點과 乘務員의 혼잡을 든 것인데, 板屋上 粧의 幅을 主船體보다 크게 잡고 駕木을 좀 더 길게 잡음으로써 구조상의 문제는 어렵더라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鋪板上의 전투행위가 불편하다는 것은 羅大用도 射夫亦不便이라 하였듯이 별도리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の 句節에 대하여서는 그 內容上 가장 重要な 事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즉 同句節에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櫓役의 位

置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說明의 形式으로 되어 있으나, 그 內容의 본질적인 重要性은 그것이 櫓에 대한 새로운 設置方法을 說明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즉 著者 自身도 「어떻게 外板이나 鋪板을 뚫고 櫓를 붙이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일찌기 말하고 있었듯이 從前에는 櫓를 鋪板 上部에 設置할 수 있는 方法은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되어 왔던 것이나, 今番에 改正된 著者の 見解는 바로 그것을 可能하게 하여 주는 櫓의 設置方法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에 대하여 다만 「板屋上 粧의 幅을 主船體보다 크게 잡고 駕木을 좀 더 길게 잡음으로써 構造上의 難點은 解決이 된다」라고만 간단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內容은 以上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그것 하나만으로 因하여서도 龜船의 復元문제는 보다 높은 次元의 水準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構造方法에 대하여서는 보다 詳細한 說明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즉 韓船은 平面底板船이므로 主船體의 斷面은 ㄱ型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 上部 側面에 上 粧의 防牌를 設置하면 그 斷面의 모양은 으레 ㄷ型이 될 것이므로 櫓를 鋪板 上部에 設置하는 문제에는 難點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著者 自身도 일찌기 그렇게 着案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難點은 「上粧의 幅을 主船體보다 크게 잡아서」 그 斷面의 모양이 ㄴ型이 되도록만 하면 解決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着案을 著者は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主船體 上部에 設置하는 上粧部의 駕木을 主船體 左右 外側으로 더 延長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每駕木마다 後方으로 下向한 韓國式櫓를 設置할 수 있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從前에는 着想되지 못하였던 그러한 船體斷面의 構造가 우리의 눈에 익숙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簡潔하면서도 韓船다운 새로운 櫓의 設置方法은 劃期的인 것이며, 그 推進能力面에 있어서나 또는 旋回能力面에 있어서 모두 대단히 優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 櫓를 船體의 側面下部에서 保護할 수 있다는 長

點에 있어서도 軍船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方式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方法이 발견된 以上, 櫓役의 位置가 鋪板上部로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櫓役位置 변경에 隨伴되어 發生하게 되는 혼잡성의 문제에 대한 同句節의 說明內容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同句節에서는 「150名 内外의 全乘務員이 한 곳에 모여서 혼잡을 이루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다만 「羅大用도(板屋船에 比하여) 射夫亦不便이라 말한 바 있으므로 그것은 별도로가 없다」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著者の 말과도 같이 150名 内外의 全乘務員이 한 곳에 모여서 現出하는 大混雜을 「射夫가 不便하다」는 말이 表現하는 狀況과 符合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은 筆者가 이미 앞에서 主張한 바와 같이 龜船의 上粧이 2層構造로 되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상황에 보다 적절히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上記한 바와 같은 大混雜은 自然解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 蓋板이 덮여진 상태에 처해 있음으로 因하여 射夫와 砲手들의 活動에는, 上記 羅大用の 句節과 같이 上部가 露天인 板屋船에 比하여 보다 不便한 樣相이 역시 隨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著者が 위에서 提示한 構造變化에 必然적으로 隨伴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의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著者は p.130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次節에서의 船幅은 上粧幅이 되는 것이고, 主船體의 幅은 그것보다 몇 尺이 작아지는 것이며, 吃水도 약간 커질 것이다. 그 밖에 원래 발표한 소론에 바뀌는 것은 없다. 다만 附錄의 復元圖들은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同句節에서는 다만 「次節에서 主船體幅이 몇 尺인가 짧아지지만 하면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이나 筆者로서는 이를 너무나도 未洽한 說明內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몇 尺인가」라고만 말하는 抽象的 規格 說明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보다도 筆者의 見解로서는 上記한 바와 같은 重大한 構造上의 見解變更에 따라 修正되어야 할 許多한 部分이 그대로 남겨져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한마디로써 「그 밖에 所論에 바뀌는 것은 없다」라고만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同書에 있어서는 數枚에 달하는 復元圖에 있어서조차도 一筆의 修正도 없이 그것이 마치 讀者들에 대한 속제인 것처럼 「復元圖는 修正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지나치게 粗略한 처리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著者は 새로운 櫓의 設置方法을着想하게 된 動機에 대하여 p.129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1975년에 〈渡海船造船式〉(同書제 6章)의 論文을 내면서 朝鮮後期船舶의 構造를 좀더 자세히 알아 보고, 同年 여름에는 韓日 협동으로 16.5m의 塹船을 가지고 仁川에서 北九州에 이르는 三韓海路를 답사하는 계획에 참여하여 8개의 韓國式櫓를 가지고 실제로 櫓役을 해보는 경험을 하고, 또한 浪元植씨가 1975년 말에 제작한 模型에 接하게도 되는 동안에 龜船의 櫓役位置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을 고치게 되었다……」

見解變更에 대한 著者の 以上과 같은 경위 설명에 관하여서는 筆者 自身은 몇 마디의 所見을 적어야만 할 입장에 처해져 있다. 왜냐하면 筆者는 櫓의 設置方法 문제와 櫓役의 位置문제에 대한 以上과 同一한 內容의 見解를 지금까지 自身의 새로운 學問的인 發見으로서 自負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1976년 9월에 發表된 論文인 「龜船構造에 대한 再檢討」(『歷史學報』 제71輯, pp.131—178)의 學問的인 價値를 아울러 公認된 사실로서 自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上記句節에서 分明히 言及되고 있는 바

와도 같이 만일 그러한 見解가 그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1975년에 이미 金在瑾教授 自身에 의하여 着案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創意性의 문제에는 중대한 混線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筆者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本格的인 論難을 다루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自身の 立場에 대한 辯明을 위하여 다음 몇가지의 言及만은 不可避한 것으로 믿어진다.

즉 첫째로는 1976년 6월에 開催된 科學史學會의 該當문제에 관한 討論會에 있어서도 金在瑾教授 및 上記句節에서 言及되고 있는 浪元植씨를 포함한 여하한 討論者에 의해서도 이상과 같은 見解는 發言된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浪元植氏는 櫓를 鋪板上部에 設置할 수 있는 方法 有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未解決문제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까지 하였었다. 둘째로는 1975년에 發表된 論文「渡海船造船式」(同書제 6章)에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1976년에 發表된 論文「板屋船」(同書제 2章)에 있어서조차도 金教授는 從來의 見解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 해당문제에 대한 變更된 見解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세째로는 今番의 著作에 있어서조차도 비록 이러한 見解가 挿入되어 있기는 하나, 全般문제에 亘한 그의 滿足스러운 適用에는 아직도 甚히 未及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3. 다음으로서는 同著作에 나타난 渡海船의 構造에 대한 見解에 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1822년에 製造되었던 同渡海船은 最大型級 韓船으로서, 同船에 대하여서는 그 元來의 設計圖本과 造船日誌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므로, 同船은 거의 完全한 資料에 立脚하여 그 構造를 究明하여 볼 수 있는 唯一한 경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앞에서의 龜船에 관한 論議에서도 본 바와 같이 韓船의 構造문제에 있어서 가장 論點이 되는것은 櫓의 設置方法문제와 2層上粧與否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上述한 科學史學會에서의 論議에서도 이와 같은 두가지의 문제에 焦點이 놓여져 있었

던 것이다.

먼저 櫓의 設置方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指摘해 두어야만 할 점은 著者가 p.224의 規格表에서 22.5尺이라고 하는 主船體幅에 該當하는 數値를 從前의 見解 그대로 上粧幅과 混同하여 잘못 記錄하고 있다는 점과, p.231에서는 「櫓의 모양과 位置는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斷定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p.248의 元來의 設計平面圖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主船體 上部의 側線, 그 左右 外側으로 더 延長되어 設置되는 駕木과 舷欄, 그리고 그 駕木들에 設置되는 後方으로 下向한 韓國式櫓의 設置位置와 그 모양, 등이 모두 明白히 그려져 있는 것이다.

물론, 櫓의 設置方法 문제 그 自體는 上述한 바와 같이 同論文이 1975년에 發表된 그 이후에 이미 解決된 문제이므로 이곳에서 再論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선 이것은 明確한 設計圖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 判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로서 參考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同書에 있어서 大體히 修正되어 있어야 할 部分들이 얼마나 그대로 放置되어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로서도 다시 한번 例示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層數문제에 留意하면서 同船의 上粧構造를 살펴 본다면 著者는 p.229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말하고 있다.

i. 「板屋洞房을 중앙부에 左右 2列로 두어 板屋 위를 使臣의 廳事하는 곳으로 하며 洞房 좌우를 通路와 櫓役場所로 한 仁祖朝의 使臣船과 그 배치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ii. 「板屋戰船과는 配置가 相異하다.」

iii. 「오직 兩舷側에 防牌만을 設置하는 점은 防牌船과 共通되는 점이다.」

以上の 引用 句節은 다음과 같이 要約 解釋될 수 있을 것이다.

i. 同船은 板屋戰船과 같이 2層部全面이 鋪板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一部分만이 鋪板되어 있다.

ii. p.248의 元圖面 중에서 오직 中央部 2列

의 洞房들만이 單層上粧의 洞房으로서 設置되는 것이며, 또한 櫓役의 場所는 露天이므로, 이것은 同書 p.225 중의 註 10에 引用된 仁祖朝의 使船과 그 配置가 基本的으로 같은 것이다.

iii. 따라서 同船 側面의 防牌는 單獨으로 세워진 單層防牌이다.

以上の 見解에 대하여 筆者로서는 몇가지의 根本的인 異論을 提起하고자 한다.

먼저 結論的으로 말하면, 첫째로 同船은 板屋船에서와 같이 2層部全體가 鋪板되어 있으며, 이것은 上記의 仁祖朝 使船과는 比較될 수 없는 別個船型의 것이다. 다음으로 同船에는 上下 兩層의 側面에 모두 防牌가 設置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元圖의 洞房들은 모두 2層部 甲板上에 設置되는 것이다.

以上の 筆者見解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몇가지 主要한 根據를 추려서 提示한다면, 우선 同渡海船이 上記한 仁祖朝의 使船과는 다른 船型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그 兩船舶의 規格을 對比檢討하는 것만으로도 足할 것이다.

즉 同渡海船의 船長은 약 100尺에 달하며 그 上粧 船幅은 30尺이 넘는다. 그러나 同書 p.225에 의하면 上記 仁祖朝使船의 船長은 40尺이고 그 船幅은 15尺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上記 使船은 그 船長에 있어서나 또는 船幅에 있어서 모두 同渡海船에는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단적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大小 兩船에 있어서 그들이 서로 上粧의 基本構造를 달리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同書 p.248의 元來의 設計圖上에는 그것이 어떻게 表示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거기에는 船體平面 左右 兩側에 각각 3個씩의 側線들이 그려져 있다. 그 중에서 제일 內側線은 舷板(즉 杉板) 上端線이며(그것은 그 옆의 「終高杉板」이라는 說明句節로부터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의 것은 「信防」이며, 제일 外側의 線은 「臥防」이다(그것은 각각 그 옆의 句節

로부터 알 수가 있다).

上記 臥防은 또한 元記錄 中에서 「偃防」또는 「弓枝」등의 名稱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信防 위에는 防牌가 있고 그 上部에는 또다시 偃防이 設置된다고 하는 忠武公全書龜船圖說의 그것과 完全히 一致되는 內容의 것이다. 그러므로 龜船圖說의 內容으로부터 臥防의 位置가 上層部인 甲板部位라는 事實이 考證되는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信防加臥防牌」라는 元圖上의 句節로부터 그 臥防에는 또다시 防牌가 設置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上粧의 基本構造는 最少限 板屋船의 그것과 同一한 것이며, 甲板部 全體가 鋪板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臥防牌도 또한 設置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문제는 무슨 根據에 의지하여 板屋洞房들이 모두 甲板 上部에 設置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뿐이라 하겠으며, 그에 대한 論據로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로 同書 p.230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操舵의 장소는 마땅히 2層部 甲板上인 것이며 따라서 最少限 沙工房단은 2層部에 設置되는 것이다. 둘째로, 戰船도 아닌 使臣船에 있어서, 대단히 넓은 甲板을 그대로 비어 두고 上房(使臣房)과 船將房까지도 모두 혼잡한 櫓役場所에 隣接하여 下層部에 位置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元圖上에 보이는 洞房 사이의 通路 같은 空間은 上層部에서 艀柱를 놓이기 위하여 필요한 空間이며, 下層部에서라면 그것은 不必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同船의 底板幅은 16尺이나 되므로 浮力에 의한 船體의 復元能力은 대단히 큰 것이며, 따라서 同船은 以上の 上粧構造를 감당하기에 充分한 것이다.

以上으로써 우리의 優先的인 관심사였던 同書에서의 船體의 構造說明에 대한 論議를 끝내고 다음으로는 同書의 內容中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하여 簡略히 言及해 보고자 한다.

4. 그러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軍船의 變遷過

程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高麗末에서 李朝 初期까지에 있어서의 水軍 및 軍船의 制度 문제는 대체로 通說化되어 있는 것이므로, 猛船制가 確立되는 世祖朝까지를 다루고 있는 제 1章의 內容에 있어서는 특별히 指摘할 사항은 없다.

다음으로 板屋船의 出現을 보게 되는 明宗朝까지에 대한 제 2章의 內容에 대하여서도 대체로 그와 同一한 것을 말할 수 있으나, 다만 板屋船 出現의 意義를 說明하는 부분에 있어서만은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同章에서 板屋船이 他國船을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船制임을 밝힌 점은 同書의 功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根據에 대한 說明 內容에 있어서는 底板構造 등에 대한 比較 檢討도 아울러 필요한 것이었다고 指摘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同書에서 板屋船의 優秀性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評價될 수 있으나 그와 同時에 그 說明 內容 중에는 약간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다.

즉, p.99의 結論節에는

「왕왕 壬辰倭亂 각 海戰은 기적적으로 승리를 얻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무릇 海戰에 있어서 軍船과 그 裝備의 우열이 승패를 판가름하는 이치로 보더라도 그 승리는 의당한 것

이고, 그 功과 영에는 우선 板屋船에 돌려야 마땅하다고 본다」

라고 하는 說明部分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誇張된 說明이며, 실제로는 優秀한 軍船을 가지고서도 敗亡한 海戰의 例도 또한 많이 있는 것이다. 사실, 忠武公의 水軍만을 除外한다면, 壬辰倭亂에 있어서는 우리의 거의 모든 水軍이, 同書의 이치로 보면 優秀한 板屋船을 가지고서도 敗하였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元均의 敗亡이 板屋船의 責任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忠武公의 승리를 「板屋船에 의한 의당한 勝利」였다고만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壬辰倭亂이 계속되던 時期와 그以後의 時期를 각각 다루고 있는 同書 제 4章과 제 5章에 대하여서도 특별히 指摘되어야 할 점은 없다. 다만, 壬辰倭亂 이후에 있어서의 戰船 大型化의 문제는 비록 그것이 一般的인 通說이기는 하나 그 근거와 內容에는 아직도 再檢討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즉 戰船의 大型化 사실을 뒷받침하여 준다고 하는 文獻資料들의 大部分은 文臣들에 의한 일종의 不平吐露에 不過하다는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만 할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1978년 2월)